

## 정기점검결과 제출 의무화에 따른 안내문

안녕하십니까? 항상 위험물 안전관리에 헌신하시는 관계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

1. 매년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에 대하여 1회 이상 정기점검(시설 별로 일반점검표 작성)을 실시하고, 실시 후 30일 이내에 **점검결과 사본을 구리소방서 재난 예방과로 제출하여**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메일 : [gg119@gg.go.kr](mailto:gg119@gg.go.kr) / FAX : 031-280-8728 / 문의 : 031-570-6322

※ (처벌사항)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**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**

2. 정기점검 결과는 사업장의 위험물제조소등 시설(소화설비 포함) 별로 각각 일반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(**통합작성 불가**) 제출과 별개로 **3년간 자체 보관** 하여야 합니다. 일반점검표 서식·작성요령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요청하시면 전자메일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.

※ 점검표 서식 : [구리소방서 홈페이지](#) [게시판 : 알림마당 → 최신소식] 참조

그 밖에 「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재개 시 안전조치 및 신고 의무가 발생」하는 최근 법령 개정사항도 숙지하여 주시고, 기타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(담당자 ☎ 031-570-6322)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앞으로도 지속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를 통해 연중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이루시고, 항상 진심 어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
## 구 리 소 방 서 장